

## 신도위원회 규정

---

### 제1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신도위원회라 한다.

### 제2조 (목적)

본 위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남신도회, 여신도회,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함께 연대하여 공동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그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조직)

본 위원회는 아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총회 공천 6인(목사 3인)
2. 총회 신도부장
3. 각 신도회 대표 2인

### 제4조 (임기)

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은 3년조로 하고 당연직은 1년으로 한다.

### 제5조 (임원)

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 
위원장 1인, 서기 1인

### 제6조 (회집)

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를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### 제7조 (임무)

1. 각 신도회 정책 개발
2. 각 신도회 협의회 개최

**제8조 (개정 및 시행)**

1.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결의로 총회에 현의하여 개정한다.
2. 본 규정은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.

1993년 9월 제78회 총회 제정

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

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

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